

행정기관명

수신

(경유)

제 목 특정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 납부 명령

1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
필요한 조치(제 호)와 관련하여 []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든 비용
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, 년 월 일에 이루어진 철거 등
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,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상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
징수하게 됩니다.
3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
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
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
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납부자		성 명						
		주 소						
납부금액	총 액		명세					
			1.	2.	3.	4.	5.	6.
	금 원정 (₩)							

붙임: 특정빈집 철거 등 소요 비용 세부 명세서 1부. 끝.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기관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
우편번호 도로명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 /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/ 공개 구분